

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

국토교통부고시제2020-929호(2020. 12. 15. 제정)

국토교통부고시제2023-980호(2023. 12. 29. 일부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시철도운영자”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도시철도 편의시설”(이하 “편의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.
3. “편의시설 설치·운영사업”(이하 “편의시설사업”이라 한다)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6호의2 라목,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4조(편의시설의 설치 기준)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,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」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)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,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.

편의시설의 종류	준용대상
판매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
업무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근린생활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
숙박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
문화 및 집회시설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
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,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대장의 작성)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,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용도의 확인)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제8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

관리번호	노선	역명
------	----	----

주소

역사층수 지상 / 지하	역사 구조	착공일/준공일	지하깊이 m
역사 총면적(1+2+3) m²	승강장면적(1) m²	대합실면적(2) m²	기타면적(3) m²

층별 시설현황

구분	층별	용도 ¹⁾	면적	비고
지하			m ²	
지하			m ²	
지상			m ²	

편의시설현황

구분	층별	연번	세부용도 ²⁾	면적	도면상 위치 ³⁾	임대현황 ⁴⁾
지하				m ²		
				m ²		
				m ²		
지하				m ²		
				m ²		
				m ²		
지상				m ²		
				m ²		
				m ²		
				m ²		
				m ²		
				m ²		

「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, 편의시설의 용도확인시 본 내용을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00 도시철도공사 사장

첨부서류	편의시설 관련 도면(개별 편의시설의 면적 및 위치는 반드시 표기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1) 대합실, 플랫폼 등 층별 사용범위를 알 수 있는 포괄적인 용도
- 2)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
- 3) 첨부서류(층별 도면 등) 상 위치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호(연번) 등 표기
- 4) 임대유무, 기간, 상호명, 임차인 성명 등에 관한 사항